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3가단519118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및 구상금 청구]

전 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 종결2015. 5. 6.

판결 선고2015.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1,180원과 그중 26,217,180원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18,334,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각 2014. 1. 8.까지는 연 5%, 2014. 1. 9.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씨티100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8.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마을6단지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C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3. 8. 30.까지 피고에 대한 치료비 26,217,180원, 2012. 9. 26.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18,33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금').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152사건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진행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4노54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치료비는 법률상의 원인 없는 것으로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합계 44,551,180원과 그중 치료비 26,217,18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수리비 18,334,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2. 9. 27.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14. 1. 8.까지는 연 5%(민법), 2014. 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원고 차량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목격자인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D의 진술내용은 경찰과 형사법정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C가 D를 매수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자료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교통사고의 목격자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꺼리는 점에 비추어 C가 사례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허위진술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자가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를 섭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서 위 목격자를 C가 섭외한 사실로 D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② 피고나 그의 가족들이 피고의 신호위반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미심쩍은 점이 없다.

피고는 사고 직후 C가 다가와 큰 소리로 왜 신호위반을 했냐며 피고를 몰아붙여서, C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통념상 C가 신호를 위반하고 피고가 신호를 지킨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C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자신으로 인하여 크게 다친 상태인 피고를 향해 위와 같이 몰아붙이고, 피고는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가족들이 신호위반을 인정한 경위에 관한 피고 주장 역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가 나중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할 것을 염려하여 C가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단지 C의 블랙박스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사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을 10호증 동영상 등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위 동영상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촬영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동영상에서 피고가 원고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차량이 나타난 시간은 21:50분 전후인데, 갑 5호증의 3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등조사용)가 작성된 시각이 사고 당일 21:47이고, 사고 시각이 21:30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차량이 원고 차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위 동영상의 차량이 원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진행하여 빨리 통과하려고

속도를 내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의 직좌신호를 목격하고 가속하여 지나갈 요량으로 황색신호와 적색신호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은 몇 초간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로 진행하기 위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멈추어 있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급출발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의 진술이나 주장에 부합하려면 위 동영상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위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여 곧바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김용찬